

정간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 자체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정정권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반박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언론사는 물론이요 심지어 법원에서도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원래 넓은 의미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권과 반박권으로 나눌 수 있다.⁹⁾ 그런데 반론권에 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이를 정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이를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언론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Ⅲ.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1. 실체적 요건

(1) 청구의 대상

정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구대상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개념요소는 정기간행물, 공표 및 사실적 주장 3가지라고 하겠다.

(가) 정기간행물, 기타

정간법,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이 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매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정간법 제2조 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를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그 개념범위가 확실하다고 하겠다. 다만 통신의 경우에는 직접 자체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거나 신문, 잡지 등을 간행하지 않고 국내외로부터 취재, 수집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언론사가 이를 받아 보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통신사 스스로 일정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언론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기간행물의 한 종류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전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통신사의 책임과는 별개로 전재보도한 언론사는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¹⁰⁾

9) 양경승, 앞의 글, p.32.

10)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6.9.18, 95나41965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기사의 경우에 연합뉴스

(나) 공표

공표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직 배포되지 않거나 방송되지 아니한 채 편집, 편성 중이거나 인쇄 중인 내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공표를 중지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방송의 경우에는 공표의 시기가 명확하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인쇄를 마치고 보급·배달망을 통하여 구독자나 일반인에게 배달, 판매를 개시한 시기를 공표의 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 사실적 주장

법제에 따라서는 프랑스와 같이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 등 가치평가적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예가 있지만, 우리 나라와 독일의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의 주장으로서 그 존재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가치평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감정·논설·논평·비평·가십(gossip)·견해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 정간법 등이 사실적 보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진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허위, 왜곡,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하여 그의 명예나 신용, 사회적 평가 등을 떨어뜨림으로써 발생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비하, 모욕, 평가절하 등의 의견이나 논평 역시 그 전제되는 사실적 주장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반박, 시정되어야 할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적 주장과 관계 없는 의견이나 가치평가 등에 대해서까지 반론을 허용할 경우 상대방의 재반론을 허용하여야 하는 등으로 끝없는 논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반론권의 본질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공정한 여론

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도 크레디트를 붙이거나, 전제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원고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회하는 등, 이 사건 기사에 진위에 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피고가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합통신의 기사에 의존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피고의 정정보도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책임은 연합통신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형성에 있는 이상 반론권 행사를 통한 언론에 대한 제약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사실적 주장이며 가치평가적 주장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 또는 사람의 행위나 불행위 등 유형적 사실은 그 존부를 입증하기가 쉬운 일이지만, 사람의 태도나 성향, 또는 자질 등은 관념적 행위로서 무형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존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독일이나 우리 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입증가능성이나 해명가능성,¹²⁾ 역사성¹³⁾ 등을 들고 있다.

언론계의 관행이나 언론윤리가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신문의 편집이나 방송의 보도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은 구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보아도 신문에 있어서 사실과 칼럼 등 고정적인 난 등은 그 자체로 봐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사실보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논평이나 비판 등 의견표현은 보통 사실관계에 근거하게 마련이고, 선정적인 잡지언론에서는 사실적 주장과 함께 주관적이거나 가치평가적 주장이 혼합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 중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과 한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이 경우에는 의견과 사실 중 무엇이 전면에서 서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사실적 주장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은 사심 없는 일반 독자가 받는 인상이라 할 것이다.¹⁴⁾

(2) 청구의 주체

정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구의 주체를 “...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피해발생과 당사자능력 2가지를 들 수 있다.

(가) 피해발생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피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를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재산권

11) 서울고등법원 결정, 1992. 8. 21, 91라161 참조. ; 양경승, 앞의 글, p.41.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3. 9. 6, 93카합792 ; 동 법원 판결, 1993. 10. 8, 92가합16462.

13) 대판 1998. 2. 27, 97다19038에서는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14) 오영권·김명섭,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년 가을호, p.29.

침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⁶⁾

그러나 비록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 즉 보도내용과 개별적이고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¹⁷⁾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명을 직접 지명하거나 초상을 게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비록 성명을 직접 지명하지 않았으나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성별, 종교, 취미, 가족관계, 신체적 특성 등을 기사화함으로써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특정인으로 식별가능하다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이다.¹⁸⁾ 그리고 둘째로는 이전의 보도에서는 익명성이 보호되었으나 기사보도 직후에 이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내용에서 그 이름이 지명된 경우 이전 보도된 당사자와 익명화된 보도내용간에도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이다.¹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원은 대체로 개별적 연관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⁰⁾ 즉 보도내용의 전후 또는 시간적 맥락을 통하여 직접 성명을 지명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당사자 능력

반론보도청구의 주체는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언론기본법 아래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²¹⁾ 상당히

15) 서울민사지법에서 1983. 8. 26에 판결한 83카17754은 일본 전문가인 신청인이 언론사의 청탁에 따라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써서 기고하였던 바, 언론사가 임의로 그 일부를 삭제, 변경, 첨가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 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에 손해를 끼쳤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당초부터 언론기본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은 민법 또는 저작권법(예컨대 동법 제16조의 원상유지권)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몰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를 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저작권은 그 보호 범익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다.

16) 양경승, 앞의 글, p.50.

17) 대판, 1986.1.28, 85다카1973.

1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82. 9. 3, 82카18633 ; 동 법원 판결, 1986. 9. 26, 86카28755 ;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7. 3. 18, 86나4096.

1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0. 7. 19, 90카41568.

20) 그러나 대판 1996. 12. 23, 95다37278 에서는 “... 여기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태도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개별적 연관성을 부당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중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년 여름호, pp.18~23.

21) 서울민사지법 판결, 1983. 11. 25, 83카22003 ; 동 법원 판결, 1984. 5. 25, 84카1598 ; 大判,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속기관,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 정부나 회사의 각 부처나 국, 과, 그리고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동호인 모임, 지역단체 등과 같이 하나의 사회적 생활단위로 실재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주체가 된다.

정간법 개정 이전에는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법인의 부속기관 등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만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일부견해도 있었으나, 1995년 개정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7항),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장의 이름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소극적 요건

(가)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형식적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게는 과중한 보도의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는 첫째로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 개념은 소송법상의 협의의 소의 이익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하겠다. 첫째로 신청인이 구하려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보도내용 중에서도 속보에 의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한 이익이 소멸한 경우²²⁾와 둘째로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²³⁾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란 객관적 목적뿐

1986. 1. 28, 85다카1973.

22) 따라서 비록 언론사가 이미 당해 보도 내용중에 신청인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거나 속보에 의하여 스스로 전의 보도를 정정하였을지라도 문제의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인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계속 인정된다(서울지방법원 판결, 1995.10.24, 95가합41982 ; 동 법원 판결, 1995.7.5, 95카기1885). 그러므로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소멸시키려면 첫째 이의 대상인 보도자체를 특정 또는 명시하고, 둘째 원문보도와 같은 공포의 효과(기사의 크기와 위치 등)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셋째 신청인이 반론보도문을 통하여 구하려 하는 내용이 모두 보도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23) 대판, 1997. 10. 28, 97다28803.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므로 여론형성에의 영향만을 표준으로 하여 본질적 핵심에 관한 반론만을 허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를 배척한다면, 보도의 대상인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 제도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⁴⁾

(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성질상 원 보도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조사,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를 억제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²⁵⁾

定刑法 제16조 제3항 단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상 어느 정도 진실하지 못한 반론보도문을 용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명백히 진실하지 못한 내용까지 보도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의 정확한 보도의무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금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결국 명확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범위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바, 판례에서는 사회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서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²⁶⁾을 들고 있고, 위와 같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겠지만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이나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²⁷⁾

(다) 상업적 광고, 기타

상업적 광고는 오로지 영리추구의 목적에서 제품 등의 선전을 통하여 재산적 법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인격적 법익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보호법익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보호법익을 재산권적 법익까지 확대해석하는 입장에서 재산적 법익 침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원 보도 중의 사실적 주자에 대한 반론범위내에서는 비록 그것이 상업적 내용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구제의 목적이 아닌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²⁸⁾

24) 오영권·김명섭, 앞의 글, p.33.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3. 9. 6, 93카합792.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3.9.6, 93카합792.

27) 양경승, 앞의 글, p.60.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 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정간법 제16조 제6항).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공개회의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언론사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²⁹⁾나 검찰수사 및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보도한 경우,³⁰⁾ 그리고 회의나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임의로 수정·첨가·보충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차적 요건

정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중재위원의 중재불성립결정이 있거나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1차로 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한 이후에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재위원회에 바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인가는 피해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달려있다.³¹⁾

정간법이 이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중재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중재위원회의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을 위한 중재절차를 사전에 미리 거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킴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전치주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오히려 지나치게 불합리한 구제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행정소송법상 동종 사건 또는 내용상 서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완화하여 적용시켰던 것과 같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 중에서 어느 일방이 중재를 거쳤으면 사실상 다른 일방에 대해서도 중재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²⁾

28) 위의 글, p.61.

29) 대판, 1986. 1. 28, 85다카1973.

3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3. 12. 6, 93카기3254.

3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82. 11. 4, 82카27454 ; 춘천지방법원 판결, 1983. 2. 9, 82카768 참조.

3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6. 6. 27, 96카합999 참조.